

용 산 기 지 이 전 협 정

2004. 10.

외 교 통 상 부

목 차

I . 용산기지 이전협정 개요	2
II . 협정 조문 및 해설	6
III .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이행합의서 전문	
44	
1. 용산기지이전협정(UA)	
45	
2. 용산기지이전협정 이행합의서(IA)	
68	

I . 용산기지이전협정 개요

용산기지이전 사업

- 미국은 주한미군이 서울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을 한국에 반환함.
 - ◆ 용산기지(118만평) 중 연락사무소용 등 부지(2.5만평 추산)을 제외한 115만평 가량 반환 예정
- 한국은 현재 서울지역에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사용할 토지와 시설을 평택지역에서 제공하고 이전에 필요한 용역 및 기타경비를 부담함.
-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지역에서 수행하던 임무와 기능을 평택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수행함.
 - ☞ 단,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의 연락사무소를 서울에 유지
- 이전일정
 - ◆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의 본부는 2007.12.31 까지 이전 목표
 - ◆ 모든 이전을 2008.12.31까지 완료
- 용산기지이전사업을 규율하기 위하여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

(FOTA) 제11차 회의시 한·미 양측은 2004년 8월 20일 용산이전협정¹⁾에 가서명

용산기지이전협정 주요내용

토지 소요 (제4조)

- 용산기지이전계획의 시행을 위한 추정토지소요는 52만평(425에이커) 범위 이내
 - ◆ 한국이 평택지역에서 제공하는 부지 : 52만평 범위내
- ☞ 협정에서는 미국측은 용산기지를 우리측에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용산기지 (총 118만평) 가운데 연락사무소용 등 부지 (2.5만평 추산)을 제외한 실제 반환 면적은 약 115만평임.

시설 소요 (제4조 및 제5조)

- 주한미군이 서울지역에서 수행하던 임무와 기능을 평택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현물로 제공하게 될 소요시설은 다음과 같음. (제4조 제1항)

1)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다. 협정문안은 본서 III 참조

- ◆ 본부 · 행정 · 의료 · 지원시설 및 삶의 질 시설
 - ◆ 지휘 · 통제 · 통신 · 컴퓨터 · 정보체계(C4I) : 기반시설 제공 및 장비 이전 또는 교체(교체비용은 900만불 이내)
- 양당사국은 소요시설 가운데 군인가족용 주택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공급되도록 하는데 합의함. (제4조가호, 제4조나호)
 - ◆ 우리나라는 미 국방부가 용산기지내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333세대)에 대해 대체주택 제공
 - ◆ 미국은 그 밖의 모든 소요주택을 평택기지내에서 미국의 비용으로 임차 또는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한국은 주택의 적시공급이 보장되도록 개발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조력을 제공
- 시설소요 및 기준 (제4조제2항)
 - ◆ 시설소요는 미 국방부 기준에 기초하여야 하고, 미국을 위하여 시공되는 유사시설과 일관성이 있어야 함.
 - ◆ 한미연합사를 위한 시설은 한국 및 미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용역(제5조제1항나호)

- 우리나라는 지정된 (주한미군) 부대와 인력의 이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운송용역을 제공함.

기타비용 (제5조제1항다호)

- 우리나라는 한미 양국에 의해 이전과 직접 관련된 불가피한 잡비로서 유효성이 확인된 기타비용 중에서 제5조제1항가호(토지 및 시설 이전비용), 제5조제1항나호(이사용역비용) 및 제5조제3항(C4I 관련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타비용을 제공함.

보상처리 원칙 (제5조제2항)

- 우리나라는 사기 · 복지 · 여가시설의 일실수입(이전을 함으로써 줄어

드는 수입)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없음.

- 우리나라는 미국을 상대로 한 청구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청구(Non-SOFA claims)에 대해서도 보상할 책임이 없음.
- SOFA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청구(Non-SOFA claims)는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주한미군의 행정적 해결절차를 통하여 해결됨. 다만, 이 규정은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어떠한 권리도 저해하지 않음.
- SOFA의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SOFA-claims)는 SOFA에 따라 처리됨.

가용예산 (제2조제7항)

- 이 협정의 이행은 양 당사국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이 목적을 위하여 승인되고 배정된 자금의 가용여부에 따른다.
 - ◆ 한미 양측은 각각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확보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함.

용산기지이전협정 관련 협정

- 용산기지이전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에 기초하며, SOFA 합동위에서 채택되는 이행약정을 상정함.
 - ◆ 관련 협정으로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and Partnership Plan: LPP)이 있음.

- 용산기지이전협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임.
- ☞ SOFA 합동위원회 문서 형식으로 채택될 이행약정은 용산기지이전협정에서 위임된 절차적·기술적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II. 협정 조문 및 해설

일 러 두 기

1. 여기서 말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한미 양국간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을 말한다.
2. 여기서 말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 또는 “SOFA”라 함은 1966년 7월 9일 서명되고 1991년 2월 1일 및 2001년 1월 18일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3. 상기 한미상호방위조약 또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타방 당사국인 아메리카합중국의 국호를 관련 협정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나 정식 국호로 언급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으로 줄여서 부르고, 아메리카합중국의 군대는 문맥에 따라 “합중국군대”나 “주한미군” 또는 “미군”으로 약칭하여 표기하였다.
4. 협정안 조문은 속에 기재하고 각 조항별로 해설을 붙인다.

(협정의 제목)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 보통 조약의 제목에서는 조약의 주체, 조약의 주제 및 조약의 형식을 정한다.
- 이 협정의 주체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라는 두 개의 국가이다. 따라서 이 협정은 국가간의 조약이다. 국가간 조약과 정부간 조약은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국제법상 국가는 정부보다도 상위 개념의 법인격이므로 국가간 조약은 조약의 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격이 높은 조약이다.
- 이 협정의 주제는 서울 지역으로부터의 미군의 이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명시한다. 조약의 제목에서 주제를 말할 때는 극히 함축적인 표현으로 중심 주제만을 말하기 때문에 제목만을 가지고 조약의 내용을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본문을 보아야 한다.
- 이 협정의 형식은 “협정”이다. 조약의 명칭은 조약(treaty), 협약(convention), 협정(agreement), 의정서(protocol) 등 다양하며, 이 중에서 조약이 가장 무게 있는 형식이다. 이 협정의 근거조약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이 있는데, SOFA가 협정(agreement)이기 때문에 근거조약과 균형상 이 협정을 “agreement”로 하였다.
- “서울지역(Seoul Metropolitan Area)”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전 대상이 용산기지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삼각지, 대방동 등 용산기지 인근지역에 산재해있기 때문이다.

(전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각각 지칭할 때는 “대한민국”, “합중국”이라 하고 함께 지칭할 때는 “양당사국”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이하 “상호방위조약”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과 그 후속 개정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에 기초하고,

합중국군대를 핵심권역으로 통합하고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라 한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라 한다) 및 주한미군사령부(이하 “주한미군사”라 한다)를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함으로써 한미동맹이 포괄적으로 강화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적시이전이 부대방호, 준비태세, 삶의 질 및 안전을 증진시키고, 상호방위를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체제에 기여하면서,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사용, 그리고 서울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데 이해를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일반적으로 조약의 전문에서는 조약의 바탕이 되는 이념적, 정치적 배경 및 다른 조약과의 관계 등을 약술한다.
- 이 협정의 전문 중 첫 번째 문단은 제목에 있는 체약국의 명칭을 다시 반복한 것이다.
- 두 번째 문단에서는 기존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주한미군지위협정과 이 협정과의 관계를 기술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가 이 협정의 근거조약으로서 이 협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명시한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SOFA의 근거조약이다.
- 세 번째 문단은 **주한 미군을 핵심기지로 집중시키고, 유엔사령**

부·한미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를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함으로써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정치적 목표를 기술한다. 현재 주한 미군의 시설이 한국내 40 여 군데에 분산되어 위치하고 있는데 이를 LPP협정²⁾에 따라서 수개의 지역으로 통합시키게 되고, 용산기지가 이전되게 되면 평택지역은 향후 주한미군의 핵심 기지로 역할을 하게 된다.

- 네 번째 문단은 용산기지를 이전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통적인 이해를 기술한다. 즉, 용산기지를 적시(適時)에 이전함으로써 부대의 발전은 물론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이용 및 서울 지역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기술한다.

2) 2003년 10월 31일에 발효한 주한미군 기지의 대대적인 통·폐합에 관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 Land Partnership Plan) 협정에 따라 미측은 향후 2011년까지 주요 도심에 소재한 28개 기지 약 214만평과 훈련장 3개 지역 총 약 3,900만평 등 주한미군 전체기지의 55.3%에 해당하는 총 약 4,100만평의 부지를 우리측에 반환할 예정이며, 이로써 주한미군 공여지는 기존 7,400만평에서 3,200만평으로 대폭 축소되고, 미군이 상주하는 주한미군 주요기지도 41개에서 23개로 축소 조정된다. 한편, 우리측은 미측에 기지 통·폐합에 필요한 대체토지 154만평을 새로이 공여하게 된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이하 “용산기지이전계획”이라 한다)은 서울지역으로부터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이전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원칙·일정 및 이행 절차를 정한다.

- 협정의 목적은 통상 향후 협정해석과 이행의 기준이 되며, 해석상 협정의 적용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 이 협정의 목적은 서울에 있는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를 서울 지역으로부터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 일정 및 이행절차를 정하는 것임을 명시한다.

〈용산기지이전계획(Yongsan Relocation Plan)의 유래〉

용산기지이전계획이라는 용어는 1990년 한미간 합의된 서울도심지 소재 미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에서 유래한다. 당시 합의서에서 이전(reloca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후부터 한미 양측은 관행상 용산기지이전사업을 지칭시 협정의 정식명칭과 병행하여 단순한 약어인 “용산기지이전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으며, 이번 협정의 교섭과정에서도 미국측은 협정의 제목에 협정명과 함께 약칭을 명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측은 국가간 협정의 정식 명칭에 약어를 병기한 선례가 없고, 또한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협정의 제목에 있던 약어를 제1조 목적부분으로 옮겨서 규정하게 되었다.

제2조 원칙

1. 이전의 시행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다.

- 유엔사·연합사·미군사의 이전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서 시행할 것임을 규정한다.
- SOFA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에게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토지의 「사용권」을 공여하고, 미국은 SOFA의 목적이 완료되는 대로 공여받은 시설과 토지의 「사용권」을 한국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시설과 토지 「사용권」의 공여와 반환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조건은 SOFA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 SOFA에 의하면 우리가 미국에 시설과 토지의 「사용권」을 공여한 것이지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공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협정에서도 시설구역(토지)의 「사용권」만을 공여한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2. 서울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부대는 평택지역으로 이전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당사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다.

- 서울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연합사·미군사를 평택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양국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필요한 경우”라 함은 용산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우리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역에서 토지를 수용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거나, 기타 기술적인 이유로 위치를 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융통성을 둔 것이다. 다만,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3.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본부 이전을 위한 목표일자가 2007년 12월 31일로 된다는 양해하에 모든 이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 모든 이전 사업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되, 유엔사·연합사·미군사의 본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한다는 목표일자를 정하였다.

4. 대한민국은 토지·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직접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 양당사국은 긴밀한 협조와 효율적인 기획을 통하여 이러한 소요를 최적화하기로 합의한다. 이전의 시행을 위한 모든 시설·용역 및 비용은 양당사국에 의하여 유효성이 확인되고,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될 것이다.

- 우리 나라가 부담하게 될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기술하였다. 즉, 토지, 시설, 이사비용, 이전과 직접 관련된 기타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한미 양측은 이러한 토지, 시설, 이사비용, 기타비용을 최적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최적화(optimize)라는 의미는 상당히 추상적이며 융통성있는 개념이다.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이행은 군사·재정·기술적 측면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고 일정 정도 사업실시에 정책적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되, 그 한계를 설정하는 개념으로 “최적화”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 ◆ 토지의 경우 그 규모를 얼마로 하는 것이 최적이냐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제공되는 토지가 너무 좁으면 기지의 기능이 잘 발휘되지 못할 것이고, 너무 넓으면 우리의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좁을수록 좋은 것도 아니고 넓을수록 좋은 것도 아니다.
 - ◆ 또한 어느 정도의 토지가 최적규모인지는 시설과도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 건물을 고층으로 지으면 토지의 면적을 좀 줄여도 충분할 수 있고, 건물을 저층으로 지으면 면적이 그만큼 많이 소요될 것이다. 반면, 고층화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군사시설에 일률적인 고층화 방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 이처럼 토지와 시설을 함께 고려하여 기지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면적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 토지와 시설의 최적화라고 할 수 있다. 이사비용과 기타 비용은 일단 적을수록 우리에게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양측이 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 이전을 위한 모든 시설과 용역 및 비용은 쌍방이 그 유효성을 確 認(validate)하게 되어 있다. 이 조항은 쌍방이 어떠한 시설, 용역,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쌍방확인이라는 의무적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 “validate” 한다는 것은 유효하다(valid)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시설, 용역 또는 비용이 용산기지 이전의 목적과 이 협정상의 원칙에 비추어 유효한 것인지에 관하여 양측이 모두 확인을 해야만 그러한 시설, 용역 또는 비용을 우리가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미국측이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그것이 용산기지 이전의 목적과 이 협정상의 원칙에 비추어 유효한 것인지를 우리가 검증해 주어야만 그 비용을 한국측이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비용은 SOFA 합동위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5. 양당사국은 이전의 시행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고 이전계획에 필요한 조정을 가할 수 있다.

- 용산기지 이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이전계획에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용산기지 이전은 방대하고 복잡한 작업으로서 이 협정을 체결하는 시점에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상황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정한 것이다. 이 항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이전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양 당사국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함께 판단하는 경우에 이 협정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6. 합중국은 이전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가용한 유지·복구 및 정비 자금을 내구시설 및 구역에 집중 사용한다.

-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한 미군부대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중 유지보수비를 내구시설과 토지에 집중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7. 이 협정의 이행은 양당사국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이 목적을 위하여 승인되고 배정된 자금의 가용여부에 따른다.

- 양측이 각각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목적을 위하여 승인되고 배정된 예산의 가용범위 내에서 이 협정을 이행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 이 항은 만일 어느 일방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이는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조약위반이라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기로 한 것이다. 정부기관은 확보된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
 - ◆ 그렇다면 이 조항은 당연한 얘기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 조항이 없다면 어느 일방이 도중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이행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에 협정의 위반이 된다.
 - ◆ 그러나 이 조항이 있음으로 인하여 예산확보가 안되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협정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협정 위반이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 또한 이 조항은 용산기지이전계획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지출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된다. 즉 이행과정에서 우리 국회는 정부가 연례적으로 제출하는 용산기지 이전사업 예산안에 대해 심의 및 승인권을 가지기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에서 국회가 이 사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다.

8.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합중국에 시설 및 구역을 대한민국에 반환하고 대한민국이 구역 및 대체시설의 사용을 합중국에 공여함에 있어서, 그리고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을 보호하고 오염된 구역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전에 관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주한미군지위협정 및 관련 합의에 따르기로 합의한다.

■ 이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쌍방이 인식한다는 점을 선언한다. 그러한 인식하에 양당사국은 미국이 시설과 구역을 우리측에 반환하고, 우리가 토지와 대체시설을 미국에 공여하며, 자연환경과 인간건강을 보호하고 오염된 구역의 환경치유를 하는데 필요한 조치 및 용산기지이전에 관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SOFA와 그 밖의 관련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SOFA에 따른다고 함은 한미 양측간 서명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2001.1월),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2002.2월),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에 관한 협력절차”(2003.5월)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의하면 SOFA 합동위원회 산하에 환경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기준(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을 정하고 매 2년마다 이를 재검토하기로 되어있다.

☞ 특히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에 관한 협력절차”는 공여/반환되는 부지에 대해 한미가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SOFA 환경분과위가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환되는 시설과 구역에 대해서는 미측이, 공여되는 시설과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비용을 부담하여 치유토록 명문화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앞으로도 환경관련 사항에 관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다.

9. 서울지역에 소재한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에 요구되는 임무와 기능이 적절한 시설로 이전된 후, 합중국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시설 및 구역을 신속히 반환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임무와 기능”이라 함은 상호방위조약상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합중국군대의 임무와 기능을 말한다.

- 서울에 있는 유엔사·연합사·미군사의 “임무와 기능”을 적절한 시설로 이전하는 대로 미국은 서울에 있는 유엔사·연합사·미군사의 시설과 구역을 신속하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이 협정에서 “임무와 기능”이라 함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규정된 공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이 수행하는 “임무와 기능”을 말한다.
- 용산기지이전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³⁾에 정해진 임무와 기능을 그대로 받아오는 것 뿐이다.
 - ◆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용산기지에서 수행하던 그러한 임무와 기능을 평택기지로 옮

3)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는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약 제4조에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겨 가서도 동일하게 수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협정은 용산기지이전으로 인하여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기지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예전 기지의 시설과 구역을 신속히 반납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10. 양당사국은 이전의 결과로 연합작전능력, 전투준비태세, 삶의 질 및 합중국군대 인원에 대한 지원이 유지되거나 제고되도록 보장한다.

- 용산기지 이전의 결과로 연합방위능력, 전투준비태세가 적어도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였다. 즉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지이전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삶의 질과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지원도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연합방위능력과 전투준비태세가 약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 이전으로 인해 우리의 안보나 방위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전문(前文)의 한미동맹이 포괄적으로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11. 양당사국은 이전계획과 현지지방개발계획이 상호보완적인 것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현지지방당국과 협조하고, 이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경제성장과 개발을 위한 기회를 조장하며, 영향을 받는 주한 미군사 기지와 지역사회간의 상호 이해·지원 및 동반자관계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될 지역의 현지지방당국과 협조를 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 새로 옮겨갈 기지에서 우리 정부가 토지를 수용하게 되고, 기지 주변에도 직간접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당사국은 기지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기지와 지방공동체간의 이해와 동반자관계를 증진시키고 현지의 지방 당국과 협력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12. 합중국 국방부 외의 합중국 정부기관이 현재 용산기지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의 처리는 양당사국의 관계 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 항에서 '합중국 국방부 외의 합중국 정부기관'이라 함은 주한미국대사관을 말한다. 현재 용산기지내에는 미국대사관이 사용하는 시설이 있다. 용산기지내에 있는 미 대사관 사용시설 처리문제는 용산기지 이전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양당사국의 관계 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한 것이다.

제3조 절차

1.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설립된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는 이전의 시행을 감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권고를 하며, 적절한 경우 시행과 관련된 권고를 토의하고 개발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한다.

- 제3조 제1항은 SOFA 합동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 용산기지이전 계획특별분과위원회(이하 “용산특별분과위”)의 설치를 규정하고, 아울러 용산특별분과위의 권한으로 ① 이전시행의 감독, ② 관련사안에 대한 권고 및 ③ 그러한 권고를 토의·개발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분과위원회는 SOFA 합동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서 용산기지이전과 관련 사항에 대해 SOFA 합동위원회에 권고를 하고, 이 협정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며 이 협정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결정을 할 권한은 없다.
- 이 조항은 용산기지이전협정 제2조 제1항4)을 통하여 SOFA 규정과 관련된다. 이와 관련하여 SOFA 제28조 제2항5)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용산기지이전협정 제3조 제1항이 용산특별분과위에 부여하는 권한을 상기 SOFA 제28조 제2항과 함께 해석하면, 이를 SOFA 합동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은 곧 SOFA 합동위의 권한과 책임이다.

4) 이전의 시행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다.

5)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1명과 합중국 대표 1명으로 구성하고, 각 대표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대리인과 직원단을 둔다. 합동위원회는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정하고, 또한 필요한 보조기관과 사무기관을 설치한다.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합중국 정부 중의 어느 일방 정부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즉시 회합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2.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이 현물로 제공한다. 이 절차에 따라 양당사국은 이전을 위한 시설종합계획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시설종합계획에는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계획문서가 포함된다.

- 이 조항은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따른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사용의 공여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밝히고 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공여하는 시설을 현물로 제공한다. 둘째, 이러한 시설공여는 SOFA 합동위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하되, 그러한 절차는 시설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하여야 한다.
 - SOFA 합동위원회는 시설공여에 관한 절차를 정하게 되고, 이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가 시설을 현물로 제공한다. 시설을 현물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여 공급하고 시설공급자를 우리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미국측은 공급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정한 시설소요와 시설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만 한국과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 ☞ 향후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이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술양해각서(E-MOU)를 채택하고 시설종합계획(Master Plan)을

수립할 예정이다.

3. 유엔사·연합사·미군사는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연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에 부대의 일부를 유지한다. 이 잔류부대의 규모, 범위 및 위치는 양당사국이 공동으로 마련하는 시설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 유엔사·연합사·미군사는 각각 서울에 연락사무소 기능을 할 잔류부대를 두게 된다. 이 잔류부대의 규모, 범위 및 위치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이를 시설종합계획(Master Plan)에 포함시킨다.
- 유엔사·연합사·미군사를 평택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우리 정부기관과의 연락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연락사무소를 서울에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4조 토지 및 시설의 소요

1. 소요시설은 본부·행정·의료·지원 시설 및 삶의 질 시설, 미군사 인원과 동반 가족구성원을 위한 숙소 및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계의 기반시설, 공용설비 집배체계, 포장진입로, 배수로, 구역조명, 조경, 울타리, 출입문 및 완전하고 안전하며 사용가능한 시설에 필요한 그 밖의 부지개발을 포함한다. 양 당사국은 상기 소요시설 중 군인가족용 주택이 합의된 장소에 다음의 방식으로 공급되도록 주선하기로 합의한다.

가. 대한민국은 합중국 국방부가 용산기지내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대체주택을 제공할 것이다.

나. 합중국은 그 밖의 모든 소요 주택을 합중국의 비용으로 임차 또는 리스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의 적시공급이 보장되도록, 토지 및 계획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같은 행정적 지원과 조력을 제공한다.

- 제4조는 용산미군기지가 이전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미국측에 사용을 공여하게 될 토지와 시설의 내역을 규정하고 있다.
- 제1항은 새로운 주한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는 평택지역에 건설할 시설의 내역과 주한미군용 주택의 제공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새로운 미군기지에 건설될 시설은 기본적으로 현재 용산기지에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그 내역은 사령부 본부 건물, 행정·의료·지원 및 삶의 질 시설, 주한미군 인원과 동반가족 구성원을 위한 숙소 및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계의 기반시설, 공용설비 집배체계, 포장진입로, 배수로, 구역조명, 조경, 울타리, 출입문 등을 포함한다.
 - ◆ 공용설비(utilities)는 상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 인터넷 접속망 등을 말한다.

- 상기 소요시설 가운데 주한미군 가족용 주택의 제공 방식에 관해서는 현재 용산기지내 미국측이 직접 건설, 사용중인 333세대에 대해서만 우리가 대체주택을 제공하며, 나머지 소요주택(약 900여 세대)은 미국측이 자체비용으로 임차 또는 리스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개발업자가 평택 기지내에서 주택을 짓게 되면, 미국측이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우리는 이에 필요한 행정지원만을 제공한다.

2. 시설소요는 합중국 국방부 기준에 기초하여야 하고, 합중국을 위하여 시공되는 유사시설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건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연합사를 위한 시설은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2항은 새로운 주한미군기지는 '미 국방부 기준'이라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며, 동 기준에 따라 건설된 시설은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중인 시설과 그 시공기준면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 한미연합사는 양국이 공동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시설기준과 관련, 9.11 사태 이후 미 국방부의 건축기준이 일부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량폭탄 테러에 대비한 안전거리 확장, 외벽두께 확대 등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서 비용이 대폭증가 하는 것은 아니다.

3. 용산기지이전계획의 시행을 위한 산출부지소요는 520,000 평/425 에이커 범위내이어야 한다. 합중국에 공여되는 토지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결정한다.

- 제3항은 평택지역에 미군기지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공여하게 될 토지의 총규모를 52만평으로 정하는 한편, 그 정확한 규모와 경계를 SOFA 합동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공여될 토지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는 시설종합계획이 완성되어야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4.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합중국에 토지와 시설의 사용을 공여할 것이다.

- 이 협정에서는 우리가 미국측에 토지와 시설의 사용권만을 준다는 것을 재차 명시하고 있으며, 제4항은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을 위해 우리가 미국에 토지와 시설의 사용을 공여하는 것은 SOFA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SOFA 제2조에는 한국이 주한미군이 사용할 구역(토지)과 시설의 사용권을 공여하게 되어 있고, 주한미군의 임무가 종료되면 미국이 한국측에 이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제5조 자금

1. 대한민국은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시행하는 데 발생하는 다음의 비용을 치르기 위한 자금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

가. 토지 및 시설 : 토지는 이 협정 제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제공된다. 대한민국은 시설의 기획·계획·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상호합의된 비용을 지급한다.

나. 지정된 부대와 인력의 이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운송 용역

다. 이 조 제1항 가호, 제1항 나호 및 제3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양당사국에 의하여 이전과 직접 관련된 불가피한 잡비로서 유효성이 확인된 그 밖의 비용

■ 제1항은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우리측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으로서 우리측이 미측에 토지·시설 및 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또한 용산기지 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타비용도 우리측이 부담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측이 부담하는 기타비용은 이전과 관련하여 예상외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잡비가 아닌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는 잡비이다.

첫째, 이전과 직접 관련된 것일 것

둘째, 불가피한 것일 것

셋째, 잡비일 것

넷째, 위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한미 양측이 그 유효성을 확인한 것일 것

◆ 토지 및 시설, 운송용역, C4I⁶⁾ 기반시설 설치와 이전에 관련된 비용은 이미

카테고리가 정해진 비용이기 때문에 기타비용의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기타비용이란 협정 체결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할 수 없는 비용들을 말하므로 그 본질상 아주 명확하게 협정에 규정할 수는 없고 상기와 같은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어느 일방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지출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 우리측이 금전이 아닌 용역으로서 제공하는 부담은 부대와 인력의 이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운송용역이 있으며, 용역부담 또한 민간 운송업체를 통해 제공하든 군이 제공하든기간에 관계없이 우리측의 부담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6) 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information) : C4I 체계는 첨단정보 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처리 및 전투 지휘·통제를 위한 인적·물적 장비체계 일반을 말한다.

2. 대한민국은 사기·복지 및 여가시설의 일실수입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없으며, 합중국을 상대로 한 청구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청구에 대하여도 보상할 책임이 없다. 이 협정상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여 합중국을 상대로 제기된 청구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청구는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주한미군의 행정적 해결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은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청구는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 제2항은 용산기지 이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상문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보상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①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 ② 청구에 대한 보상문제를 다룬다.

□ 사기·복지·여가시설의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문제

- SOFA 제13조는 군 판매점, 식당, 사교클럽, 극장 등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가 설치할 수 있는 각종 비세출 자금기관(Non-Appropriated Fund Organizations)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세출 자금기관은 합중국 군대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사기진작이나 후생증대, 또는 여가선용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이들 시설은 기지내에서 군대 구성원이나 고용원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은 일단 설치되면 자체의 수입이나 소득원을 가지고 운영되게 된다. 그러나 기지가 이전되게 되면, 현재 용산 등 미군 기지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들 사기·복지·여가 관련 시설들은 새로운 시설로 옮겨짐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지이전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는데, 기지 이전으로 인해 감소된 수입이 바로 일실수입(lost revenue)이

다. 본 항은 이러한 미군기지내 시설들이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일실수입에 대하여 우리가 일체의 보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 ☞ 한편, 일실수입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수입이 어떤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상실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업 손실과는 다른 개념이다. 총수입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것이 영업수익(operating income)이 되는데 영업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영업손실이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손익 여하를 막론하고, 총수입의 감소에 대하여 우리의 보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면책범위를 최대한으로 잡은 것이다.

□ SOFA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청구 (Non-SOFA Claims)에 대한 보상문제

- 제2항 1문의 후단에서는 용산기지 이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구 중 SOFA가 적용되지 않는 청구(Non-SOFA 청구)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인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 ◆ Non-SOFA 청구란 합중국을 상대로 한 계약상 책임 등에 관한 각종 청구로서, SOFA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청구를 말한다.
- 이러한 청구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면책이 되나, 이 협정상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여 미국을 상대로 제기된 청구로서 Non-SOFA 청구는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주한미군의 행정적 해결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은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어떠한 권리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 SOFA 청구의 처리

- 용산기지이전협정 제5조 제2항은 후단에서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청구는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따라 처리된다.”고 규정하여 용산기지이전협정 이행과정에서도 SOFA에 따른 청구에는 여전히 한미 양국간에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 참고: SOFA상 청구권 개요

SOFA 제23조에 따른 청구는 ① 공무상 청구, ② 비공무상 청구, ③ 계약상 청구 등으로 분류된다. 아래에서는 SOFA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구제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1. 주한 미군에 의한 피해 구제

- 주한미군에 의해 재산상 손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우리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는 배상심의 절차나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미군에 대해 하지 않고 정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미군 개인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SOFA 제23조 제8항 참조).
- 미군의 공무중 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한국군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를 우리 정부 또는 법원이 심사하여 배상금을 결정하고 지급하며, 피해가 미국측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을 경우 미측이 75%, 우리측이 25%를 부담한다. 여타의 경우에는 한·미 양측이 나누어 50%씩 부담한다. 과실이 없는 우리 정부가 피해금 보상을 부담하는 것은 일면 불평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미군의 공무행위의 목적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부담비율은 미·일이나 미·독간 SOFA에서도 마찬가지다.
- 비공무중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배상심의회가 배상액을 산정 하여 미군 당국에 통보하면 미군 당국이 보상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가 이러한 보상금 지급에 전적으로 동의할 경우에 이를 지급하며 보상금은 전액 미측이 부담한다.
- 이러한 보상금 지급과는 별도로 피해자는 미군 개인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민사소송의 결과로 미군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미군 당국은 전적으로 이에 협조해야 한다.
- 미군에 대한 납품 등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SOFA 합동위원회의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다. 이는 물론 우리 법원

에서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에 대해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2. 주한 미군을 상대로 민사소송

- 미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우리 정부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미군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소송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 재판 출석, 증거수집 및 압류 등 강제 집행의 절차가 필요하다. 지난 2001년 4월 발효된 개정 SOFA에는 이러한 민사 소송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였다(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23조 비형사재판 절차).
- 미군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처리를 위해 주한미군은 우리 송달 기관의 직접송달을 허용해야 함과 아울러 우리 법원의 서류를 송달받는 연락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주한미군이 지정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한 공시 송달의 방법도 확보하고 있다.
- 또한 미군 개인이 법원 출석을 명령받으면 주한미군 당국은 이러한 미군의 출석을 위해 미군당국 권한내의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미군당국은 우리 법원의 요청에 따라 재판진행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우리 법원 관계자가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미군 시설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민사소송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오면 미군당국은 이의 이행을 위해 미군의 봉급에 대한 압류 등 강제 집행 등을 포함하여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미·일 SOFA는 공시 송달과 봉급압류가 불가능하며 미·독 SOFA는 직접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미 SOFA는 미군에 의한 피해 발생시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피해 해소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 SOFA상 청구권(Claims)의 처리구조

구 분	종 류	내 용	한국측 청구 행사	피해구제	
SOFA 청 구 (제23조)	① 공무상 청구	㉠ 한국군대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청구 포기		
		㉡ 한국 소유 기타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1,400불 이하 청구 포기		
		㉢ 한국 군대 구성원에 대한 부상·사망에 대한 청구권	청구 포기	국내법 적용	
		㉣ 사인에 대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한미간 책임분담	국가배상/ 민사상 청구	
	② 비공무상 청구	㉠ 불법행위 청구권	원인행위 제공측이 배상액 부담		행정절차 및 민사상 청 구
		㉡ 자동차 손해배상 청구권			
	③ 계약상 청구	계약상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청구권	SOFA 비적용 (조정 또는 민사소송)		

3. 양당사국은 이전과 관련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에 관한 사항을 다음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가. 대한민국은 시설종합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설에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기존 장비를 이전한다. 특정 장비가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이 교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장비는 교체될 것이다. 장비의 교체를 위한 대한민국의 부담은 미화 9백만불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유엔사 및 연합사를 위하여 현재 기획·계획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한·미 공동 성능향상·개발계획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주한미군사를 위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성능향상 또는 개선을 위한 자금은 합중국이 조달한다.

■ C4I 시설의 이전 및 대체비용 부담

- ◆ 한국은 용산기지에 설치되어 새로운 기지로 이전되는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 시설의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이러한 시설로 유엔사, 연합사, 미군사의 상기 시설을 이전한다. 그러나 상기 시설 중 이전으로 인해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이 교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장비는 교체될 것이다. 장비의 교체를 위한 우리나라의 부담은 미화 9백만불을 초과할 수 없다.

■ C4I의 성능향상(upgrade)에 대하여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 ◆ 유엔사 및 연합사의 C4I 장비 성능향상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계없이 기존의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유엔사 및 연합사 C4I 성능향상 비용은 이 협정과 무관하다.
- ◆ 미군사가 사용할 C4I 장비의 성능향상 및 개선을 위한 비용은 미국이 부담토록 되어있다.

제6조 이행약정

양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절차적·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용산기지이전협정은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기본원칙과 당사국간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고 있을 뿐, 이전과 관련된 모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전절차, 이전대상 부대 및 이전예정 지역, 세부적인 이전추진계획, 양측간 업무분담, 비용지급 및 확인절차 등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이행약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행약정은 용산기지 이전과 직접관련된 주무부처간 또는 용산기지 이전을 위해 설치될 각종 위원회의 합의나 토의 등을 통해서 작성될 수 있다. 이 조는 바로 이러한 이행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이행약정 체결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 ☞ 현재 한·미 양측간 성안중인 절차적·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이행약정으로는 ① 용산기지이전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합의서, ② 한미양국간 기술양해각서, ③ 비용지급절차 합의서 등이 있다. 이들 이행약정들은 용산기지 이전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한미 양국 관계 기관간 협력 및 협의절차 등 순수한 기술적, 행정적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양 당사국간 중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이행약정」이라 함은 조약·협정의 하부 문서로서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조약·협정의 이행을 위한 절차적·기술적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이행약정은 이 협정이 정한 바를 벗어날 수 없고, 이행약정을 통해 협정의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모협정과 배치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도 없다. 이는 법률의 하위규범인 명령으로 母法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7조 발효 및 개정

1. 이 협정은 양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당사국의 상호동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다.

- 용산기지이전협정은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날 발효한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의 국내절차가 끝나는 대로 서면통보를 통해 발효될 것이다.
 - ◆ 이 협정은 우리 헌법 제60조①항에 열거된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발효시킬 것이다.
- 개정은 여타의 조약과 마찬가지로 상호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협정의 중요한 본질적 구성부분에 대한 개정인 경우 헌법 제60조①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다시 받는 등 조약체결 절차에 따를 것이다.

제8조 유효기간 및 종료

이 협정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1년 앞서 서면으로 이를 종료할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용산기지이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은 용산기지이전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일방 당사국이 협정 종료의사를 통보할 경우에는 상기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만료되도록 한다. 다만, 당사국간 상호신뢰 보호를 위해 1년의 예고기간을 두어서, 갑작스런 조약의 해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월 일 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김 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대한민국대표

게리 알 트렉슬러
미합중국 공군 중장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미합중국대표

윤 광 응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리언 라포트
미합중국 육군대장
주한미군사령부 사령관

Ⅲ.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이행합의서 전문

1. 용산기지이전협정(UA)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각각 지칭할 때는 “대한민국”, “합중국”이라 하고 함께 지칭할 때는 “양당사국”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이하 “상호방위조약”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과 그 후속 개정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에 기초하고,

합중국군대를 핵심권역으로 통합하고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라 한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라 한다) 및 주한미군사령부(이하 “주한미군사”라 한다)를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함으로써 한미동맹이 포괄적으로 강화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적시이전이 부대방호, 준비태세, 삶의 질 및 안전을 증진시키고, 상호방위를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체제에 기여하면서,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사용, 그리고 서울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데 이해를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목 적

이 협정(이하 “용산기지이전계획”이라 한다)은 서울지역으로부터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이전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원칙·일정 및 이행절차를 정한다.

제 2 조 원 칙

1. 이전의 시행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다.
2. 서울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부대는 평택지역으로 이전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당사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다.
3.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본부 이전을 위한 목표일자가 2007년 12월 31일로 된다는 양해하에 모든 이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4. 대한민국은 토지·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직접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 양당사국은 긴밀한 협조와 효율적인 기획을 통하여 이러한 소요를 최적화하기로 합의한다. 이전의 시행을 위한 모든 시설·용역 및 비용은 양당사국에 의하여 유효성이 확인되고,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될 것이다.
5. 양당사국은 이전의 시행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고 이전계획에 필요한 조정을 가할 수 있다.
6. 합중국은 이전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가용한 유지·복구 및 정비 자금을 내구시설 및 구역에 집중 사용한다.
7. 이 협정의 이행은 양당사국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이 목적을 위하여 승인되고 배정된 자금의 가용여부에 따른다.
8.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인정하면서, 양당사국은 합중국이 시설 및 구역을 대한민국에 반환하고 대한민국이 구역 및 대체시설의 사용을 합중국에 공여함에 있어서, 그리고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을 보호하고 오염된 구역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전에 관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주한미군지위협정 및 관련 합의에 따르기로 합의한다.
9. 서울지역에 소재한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에 요구되는 임무와 기능이 적정한 시설로 이전된 후, 합중국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시설 및 구역을 신속히 반환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임무와 기능”이라 함은 상호방위조약상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합중국군대의 임무와 기능을 말한다.

10. 양당사국은 이전의 결과로 연합작전능력, 전투준비태세, 삶의 질 및 합중국 군대 인원에 대한 지원이 유지되거나 제고되도록 보장한다.

11. 양당사국은 이전계획과 현지지방개발계획이 상호보완적인 것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현지지방당국과 협조하고, 이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경제성장과 개발을 위한 기회를 조장하며, 영향을 받는 주한미군사 기지와 지역사회간의 상호 이해·지원 및 동반자관계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12. 합중국 국방부 외의 합중국 정부기관이 현재 용산기지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의 처리는 양당사국의 관계 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절 차

1.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설립된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는 이전의 시행을 감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권고를 하며, 적절한 경우 시행과 관련된 권고를 토의하고 개발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한다.

2.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이 현물로 제공한다. 이 절차에 따라 양당사국은 이전을 위한 시설종합계획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시설종합계획에는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계획문서가 포함된다.

3.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는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연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에 부대의 일부를 유지한다. 이 잔류부대의 규모·범위 및 위치는 양당사국이 공동으로 마련하는 시설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 4 조 토지 및 시설의 소요

1. 소요시설은 본부·행정·의료·지원 시설 및 삶의 질 시설, 주한미군사 인원과 동반 가족구성원을 위한 숙소 및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계의 기반시설, 공용설비 집배체계, 포장진입로, 배수로, 구역조명, 조경, 울타리, 출입문 및 완전하고 안전하며 사용가능한 시설에 필요한 그 밖의 부지개발을 포함한다. 양당사국은 위 소요시설중 군인가족용 주택이 합의된 장소에 다음의 방식으로 공급되도록 주선하기로 합

의한다.

가. 대한민국은 합중국 국방부가 용산기지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대체주택을 제공할 것이다.

나. 합중국은 그 밖의 모든 소요 주택을 합중국의 비용으로 임차 또는 리스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의 적시공급이 보장되도록, 토지 및 계획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같은 행정적 지원과 조력을 제공한다.

2. 시설소요는 합중국 국방부 기준에 기초하여야 하고, 합중국을 위하여 시공중인 유사시설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건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연합사를 위한 시설은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용산기지이전계획의 시행을 위한 산출부지소요는 520,000 평/425 에이커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합중국에 공여되는 토지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결정한다.

4.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합중국에 토지와 시설의 사용을 공여할 것이다.

제 5 조 자 금

1. 대한민국은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시행하는 데 발생하는 다음의 비용을 치르기 위한 자금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

가. 토지 및 시설 : 토지는 이 협정 제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제공된다. 대한민국은 시설의 기획·계획·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상호합의된 비용을 지급한다.

나. 지정된 부대와 인력의 이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운송 용역

다. 이 조 제1항 가호, 제1항 나호 및 제3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양당사국에 의하여 이전과 직접 관련된 불가피한 잡비로서 유효성이 확인된 그 밖의

비용

2. 대한민국은 사기·복지 및 여가시설의 일실수입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없으며, 합중국을 상대로 한 청구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청구에 대하여도 보상할 책임이 없다. 이 협정상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여 합중국을 상대로 제기된 청구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청구는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주한미군의 행정적 해결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은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어떠한 권리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청구는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3. 양당사국은 이전과 관련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에 관한 사항을 다음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가. 대한민국은 시설종합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설에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기존 장비를 이전한다. 특정 장비가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이 교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장비는 교체될 것이다. 장비의 교체를 위한 대한민국의 부담은 미화 9백만불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유엔사 및 연합사를 위하여 현재 기획·계획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한·미 공동 성능향상·개발계획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주한미군사를 위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성능향상 또는 개선을 위한 자금은 합중국이 조달한다.

제 6 조 이행약정

양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절차적·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 7 조 발효 및 개정

1. 이 협정은 양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당사국의 상호동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다.

제 8 조 유효기간 및 종료

이 협정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1년 앞서 서면으로 이를 종료할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용산기지이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월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과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김 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대한민국 대표

게리 알 트렉슬러

미합중국 공군중장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미합중국 대표

윤 광 응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리언 라포트

미합중국 육군대장
주한미군사령관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reinafter referred to respectively as the ROK, the US, and collectively as "the Parties"),

Based upon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utual Defense Treaty") and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subsequent amend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OFA");

Desiring that the ROK-US alliance be comprehensively enhanced by consolidating US forces around key hubs and by relocating Headquarters United Nations Command (UN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and US Forces Korea (USFK)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Sharing the common understanding that a timely relocation is essential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and efficient use of ROK land and the continued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le enhancing force protection, readiness, quality of life, and safety, and contributing to an enduring structure of USFK for the purpose of mutual defense;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PURPOSE

This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Yongsan Relocation Plan") provides the principles, timetable, and implementing procedures required to complete the relocation of UNC, CFC, and USFK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RTICLE 2
PRINCIPLES

1. The implementation of the relocation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SOFA.
2. UNC, CFC, and USFK elements station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hall be relocated to the Pyongtaek area and, if necessary, to other areas by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3. All relocations will be completed by 31 December 2008,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target date for the relocation of the UNC, CFC, and USFK Headquarters will be 31 December 2007.
4. The ROK shall provide land, facilities, moving services, and provide for other expenses directly related to the relocation. The Parties agree to optimize these requirements through close coordination and efficient planning. All facilities, services, and expenses incurred in implementing the relocation will be validated by the Parties, and paid using procedures to be established by the SOFA Joint Committee.
5. The Parties may mutually consult and make necessary adjustments to the

relocation plan if there are significant changes in the requirements of USFK facilities and areas in the proc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location.

6. The US shall focus available Sustainment, Restoration, and Maintenance funding into enduring facilities and areas to reduce the cost of relocation.

7.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funds authorized and appropriated for this purpose by the respective national laws of the Parties.

8. Recognizing and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agree that the US return of facilities and areas to the ROK, the ROK grant of the use of areas and replacement facilities to the US, and other relocation actions including those necessary to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and to remedy contaminated area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SOFA and relevant agreements.

9. The US shall return UNC, CFC, and USFK facilities and area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promptly, following the relocation of their required missions and functions to suitable facilitie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term "missions and functions" means those missions and functions of US forces in fulfillment of commitments identified in the Mutual Defense Treaty.

10.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combined operational capability, combat readiness, quality of life, and support for US forces personnel shall be maintained or enhanced as a result of the relocation.

11. The Parties shall coordinate with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to ensure the relocation plan and the local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s are mutually supportive; support opportunities for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in the regions impacted by the relocations; and foster mutual understanding, support, and partnership between the affected USFK installations and local communities.

12. The disposition of facilities and areas in the Yongsan Garrison currently occupied by non-Department of Defense US Government agencies shall be arranged between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ARTICLE 3 PROCEDURES

1. The Ad Hoc Subcommittee for the Yongsan Relocation, established by the SOFA Joint Committee, shall oversee implementation of the relocation, make recommendations on relevant matters, and create working groups to discuss and develop recommendations concerning implementation, as appropriate.

2. Facilities shall be provided in kind by the ROK, following the procedures as developed by the SOFA Joint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the Parties shall jointly develop a comprehensive Master Plan for the relocation. The Master Plan shall provide programming documentation for facilities required to implement this Agreement.

3. UNC, CFC, and USFK shall maintain elements in Seoul to facilitate liaison with ROK government agencies. The size, scope, and location of these residual elements shall be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as part of the comprehensive Master Plan to be jointly prepared by the Parties.

ARTICLE 4 LAND AND FACILITIES REQUIREMENTS

1. Required facilities include headquarters, administrative, medic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facilities, living quarters for USFK personnel and accompanying family members,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information

(C4I) infrastructure, utilities distribution/collection systems, paved access roads, drainage, area lighting, landscaping, fencing, gates, and any other site development necessary for a complete, secure, and usable facility. Among the required facilities above, the Parties agree to arrange the provision of military family housing at agreed locations in the following manner:

- a. The ROK will provide replacement housing for all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owned housing currently in the Yongsan Garrison.
 - b. The US will rent or lease all other required housing at US expense. The ROK shall provide administrative support and assistance, such as resolution of land and planning issues, to ensure timely provision of the housing to support the relocation.
2. Facilities requirements shall be based upon US DOD standards, consistent with similar facilities being constructed for the US, and all reasonable efforts shall be made to minimize construction costs. Facilities for CFC shall meet ROK and US standards.
 3. The estimated land requirements to implement the Yongsan Relocation Plan shall be in the range of 425 acres/520,000 pyong. The precise size and boundaries of the land to be granted to the US shall be determined by the SOFA Joint Committee.
 4. The ROK will grant the use of land and facilities to the US in accordance with the SOFA.

ARTICLE 5

FUNDING

1. The ROK shall provide funding or services for the following expenses incurred in implementing the Yongsan Relocation Plan:

- a. Land and facilities: Land shall be provided as set out in Article 4 of this Agreement. The ROK shall fund mutually agreed expenses associated with planning, programming, design and construction of facilities.
- b. Transportation services required to relocate designated units and personnel.
- c. Other expenses validated by the Parties as unavoidable miscellaneous costs directly related to the relocation, and that may not be included in Article 5, paragraphs 1.a., 1.b., and 3.

2. The ROK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compensation for lost Morale-Welfare-Recreational facilities revenue, or compensation for any claims against the US to which relevant provisions of the SOFA are not applicable. Claims presented to the US arising out of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and not falling within the SOFA will be resolved through the administrative settlement procedure of USFK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USFK. This provision, however, shall not prejudice any right of claimants to file a civil suit. Claims to which relevant provisions of the SOFA are applicable wi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SOFA.

3. The Parties shall arrange C4I matters related to the relocation in the following manner:

- a. The ROK shall provide C4I infrastructure in the new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master plan, and relocate the existing C4I equipment for UNC, CFC, and USFK. If certain equipment is not reusable or its relocation is expected to cost more than its replacement, it will be replaced. The ROK's contribution for replacement of equipment shall not exceed nine (9) million U.S. dollars.
- b. ROK-US joint C4I upgrade and development programs currently planned and programmed for UNC and CFC will continue as planned, independent of Yongsan Relocation. C4I upgrade or improvement for

USFK shall be funded by the US.

ARTICLE 6
IMPLEMENTING ARRANGEMENTS

The Parties may conclude, through the SOFA Joint Committee, implementing arrangements on procedural and technical details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loc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RTICLE 7
ENTRY INTO FORCE AND AMENDMENT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when the Parties exchange written notifications that their respective lega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fulfilled.
2.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in writing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ARTICLE 8
DURATION AND TERMINATION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completion of the Yongsan Relocation Plan, unless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in writing, one year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Republic of Korea this day of 2004,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IM, SOOK

Director-General

North American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ublic of Korea Representative to the

ROK-US SOFA Joint Committee

GARRY R. TREXLER

Lieutenant General

United States Air Forc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to the

ROK-US SOFA Joint Committee

YOON, KWANG WOONG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LEON J. LAPORTE

General, US Army Commander, USFK

2. 용산기지이전협정 이행합의서(IA)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개정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 관한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의 발효에 관한 동 협정 제7조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또한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이 문서에 부속된 용산기지이전계획특별분과위원회의 합의권고안을 승인하기로 합의하였다.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2004년 월 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과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된 이 각서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과미합중국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용산기지이전계획특별분과위원회

2004년 월 일

합동위원회를 위한 각서

제목: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용산기지이전계획)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

1. 참조문건

가. 1953년 10월 1일 서명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나. 1966년 7월 9일 서명되고 1991년 2월 1일 및 2001년 1월 18일 개정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다. 1990년 6월 25일 서명된 서울도심지소재미군부대의이전을위한기본합의에관한대한민국국방부와주한미군사령부간의합의각서(이하 “합의각서”라 한다)

라. 1990년 6월 25일 서명된 서울도심지소재미군부대의이전을위한합의각서에관한대한민국국방부와주한미군사령부간의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

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및 제5조에서 위 다호에 언급된 합의각서를 인정한 1991년 5월 20일자 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의 승인조치, 1991

년 6월 7일자 제169차 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항 및 붙임 19

바. 2003년 5월 30일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환경정보공유및접근절차부속서 A(미군반환·공여지환경조사와오염치유협의를위한절차합의서)

사. 2004년 월 일 서명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이하 “용산기지이전계획”이라 한다)

아. 2002년 3월 29일 서명되고 2004년 월 일 개정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2. 용산기지이전계획 제3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위한특별분과위원회(용산기지이전계획 특별분과위원회)는 양당사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참조문건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와 조건을 규정하는 합의권고를 개발한다. 이 합의권고와 위 참조문건 제1항사호의 용산기지이전계획은 위 참조문건 제1항다호 및 제1항라호를 대체한다.

3. 기획과 계획소요

가. 기획·계획·설계·시공을 위한 절차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승인하는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위한 기술양해각서에 따른다.

나. 양당사국은 위 가호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포괄적인 시설종합계획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시설종합계획은 신축 및 개수 건물, 공용설비, 도로와 부지, 그리고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계 기반시설 등을 포함하여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에 대한 계획문서를 포함할 것이다.

4. 시설 및 구역

가. 대한민국이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라 한다)·연합사령부(이하 “연합사”라 한다) 및 미군사령부(이하 “주한미군사”라 한다)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미합중국에 공여하고, 미합중국이 기존 시설과 구역을 대한민국에 반환함에 있어서 주한미군지위협정 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시설 및 구역의 공여 및 반환, 그리고 공여된 구역에서의 침해 제거는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집행될 것이다.

나.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사용은 2005년까지 미합중국에 공여될 것이다. 공여될 토지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는 합동조사에 의하여 정하고 승인을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제출된다. 위 참조문건에 따라 이미 반환된 미8군 골프장, 캠프 이사벨, 서울 클럽과 그 밖의 시설들은 전체 이전의 일부로 본다.

다. 미합중국이 서울에 있는 다음과 같은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시설 및 구역을 아래 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당사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u>시 설</u>	<u>반환연도</u>	<u>시 설</u>	<u>반환연도</u>
8군 종교휴양소	2006년	캠프 킴	2008년
캠프 그레이	2006년	캠프 코이너	2008년
캠프 모스	2006년	용산 메인 및 사우스포스트	2008년
유엔사 구역	2008년	TMP 구역	2008년
극동공병단 구역	2008년	성남 골프장	2008년
서빙고	2008년	니블로막사 및 한남빌리지	2008년

라. 미합중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캠프 그레이 및 캠프 킴을 반환한다. 양당사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대체시설 건축을 추진한다. 캠프 그레이 및 캠프 킴의 현행 임무와 기능을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용산기지이전계획에 따라 지급될 것이다.

마. 시설 및 구역의 공여 또는 반환 이전에, 참조문건 제1항바호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환경조치와 협의가 계획되고 집행될 것이다.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건이 상호합의될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절차의 완

료는 연기될 수 있다.

바. 주요 기관의 위치

- (1)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본부 및 관련 부대와 기관은 획득되어 미합중국에 공여될 추가부지에 의하여 확장되는 캠프 험프리로 이전한다.
- (2) 미8군 사령부 및 현재 서울에 위치한 주요 예하부대와 관련 기관은 획득되어 미합중국에 공여될 추가부지에 의하여 확장되는 캠프 험프리로 이전한다.
- (3) 그 밖의 주한미군사 부대, 기관, 그리고 임무와 기능은 승인되는 시설종합계획에 따라 오산 공군기지, 캠프 험프리, 캠프 캐롤, 또는 캠프 헨리로 이전한다.
- (4)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는 대한민국 정부기관과의 연락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서울에 부대의 일부를 유지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러한 연락부대를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은 국방부 인근에 헬기장을 운영하고 유지하며,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가 이 헬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5) 주한미군사는 용산 사우스 포스트에 있는 드래곤 힐 호텔과 캠프 모스에 있는 통신시설을 유지한다. 주한미군사가 서울에서 유지하는 시설의 최종 경계와 범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승인하는 시설종합계획의 일부로서 결정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잔류시설의 출입과 부대방호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5. 자금: 양당사국은 용산기지이전계획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검토, 유효성 확인,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상호 개발한다. 이러한 절차는 용산기지이전계획 특별분과위에 의하여 지명되는 공동실무작업반에 의하여 작성되고,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다.

6. 개정: 개정을 위한 건의는 양당사국의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제출될 수 있다. 개정요구는 희망하는 개정안 발효일보다 적어도 6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개정은 양당사국이 개정의 이행을 위한 각자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 승인된 개정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 합의권고에 첨부될 것이다.

7. 발효: 이 합의권고는 양당사국이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용산기지이전계획)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 발효한다.

김동기
대한민국 육군대령
용산기지이전계획특별분과위원회
대한민국위원장

대니엘 엠 윌슨, 주니어
미합중국 육군대령
용산기지이전계획특별분과위원회
미합중국위원장

합동위원회의 각서

2004년 월 일 합동위원회의 긴급처리절차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김 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대한민국대표

게리 알 트랙슬러
미합중국 공군중장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미합중국대표

**Memorandum of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Agreed Recommend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ve agreed, through the Joint Committe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XXVIII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s amended(SOFA), to approve the Agreed Recommendation of the Ad Hoc Subcommittee for the Yongsan Relocation Plan, as annexed hereto,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7 thereof regarding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upon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Land Partnership Plan of March 29, 2002.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Memorandum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 day of ---- 2004,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GOVERNMENT OF**

FOR THE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AD HOC SUBCOMMITTEE FOR THE YONGSAN RELOCATION PLAN
UNDER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INT COMMITTEE, STATUS OF FORCES AGREEMENT

_____, 2004

MEMORANDUM FOR The Joint Committee

SUBJECT: Agreed Recommend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Yongsan Relocation Plan)

1. References:

- a.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signed October 1, 1953.

National Defense (MND) and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USFK) the Concerning Agreements-in-Principle for Relocation of US Force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igned June 25, 1990.

d.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between the ROK MND and the USFK and Concerning the Memorandum of Agreement of June 25, 1990 for Relocation of US Force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igned June 25, 1990.

e. Action of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recording approval on 20 May 1991 to recognize the MOA referred to in paragraph c, above under the (SOFA), Articles II and V "Minutes of the 169th US-ROK SOFA Joint Committee Meeting", paragraph 13 and Enclosure 19, June 7, 1991.

f. Joint Environmental Information Exchange and Access Procedures, with Tab A (Procedures for Environmental Survey and Consultation on Remediation for Facilities and Areas Designated to be Granted or Returned), approved by the SOFA Joint Committee on 30 May 2003.

g.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Relocation Of US Force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Yongsan Relocation Plan), signed _____, 2004.

h.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Land Partnership Plan signed 29 March 2002, as amended, ___2004.

2. Pursuant to Article 3, paragraph 1, and Article 6 of the Yongsan Relocation Plan, the Ad Hoc Subcommittee for the Yongsan Relocation Plan (YRP Ad Hoc Subcommittee) is to develop the Agreed Recommendation that defines detailed procedures,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 Parties shall implement the references through the SOFA Joint Committee. This Agreed Recommendation (AR), along with the Yongsan Relocation Plan in reference 1.g above, shall supersede references 1.c and 1.d above.

3. Planning and Programming Requirements:

a. The procedures for planning, programming, design, and construction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Engineeri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the Yongsan Relocation Plan approved by the SOFA Joint Committee.

b. The Parties shall jointly develop a comprehensive Master Plan using the procedures cited in paragraph a. above. The comprehensive Master Plan will provide programming documentation for facilities required to implement the Yongsan Relocation Plan, to include new and modified buildings, utilities, roads and grounds, and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4. Facilities and Areas:

a. The ROK grant of the use of facilities and areas to the US needed for the relocation of United Nations Command (UNC), Combined Forces Command (CFC), and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unit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US return of existing facilities and areas to the ROK, shall be executed in accordance with the SOFA Facilities and Areas Subcommittee procedures. The grant and return of facilities and areas, as well as removal of encroachments from the granted areas, will be executed on the mutually agreed timetable.

b. Use of the land required to implement the Yongsan Relocation Plan will be granted to the US by 2005. The precise size and boundaries of land to be granted shall be determined by joint survey and submitted to the SOFA Joint Committee for approval. The Eighth US Army Golf Course, Camp Isabell, Seoul Club, and other facilities previously returned in accordance with the references shall be considered part of the entire relocation.

c. The Parties shall accomplish all required actions to facilitate the US return of the following UNC, CFC, and USFK facilities and areas in Seoul in

accordance with the timeline below.

Facility	Return Date	Facility	Return Date
Eighth Army Retreat Center	2006	Camp Kim	2008
Camp Gray	2006	Camp Coiner	2008
Camp Morse	2006	Yongsan Main & South Post	2008
United Nations Compound	2008	TMP Compound	2008
FED Compound	2008	Sungnam Golf Course	2008
Seobingo	2008	Niblo Barracks & Hannam Village	2008

d. The US shall return Camp Gray and Camp Kim in accordance with the Land Partnership Plan. The Parties shall proceed with construction of replacement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Land Partnership Plan. Expenses required to relocate the missions and functions currently at Camp Gray and Camp Kim out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ill be provided under the Yongsan Relocation Plan.

e. Prior to the grant or return of facilities and areas, environmental actions and consultations as agreed in reference 1.f will be planned and executed. The completion of such environmental procedures may be deferred if special conditions are mutually agreed to facilitate the relocation.

f. Major Organization Locations:

- (1) The Headquarters of UNC, the Headquarters of CFC, the Headquarters of USFK, and associated units and agencies shall relocate to Camp Humphreys, as augmented by additional land to be acquired and granted to the US.
- (2) The Headquarters of Eighth United States Army, its major subordinate units now in Seoul, and associated agencies shall relocate to Camp Humphreys, as augmented by additional land to be acquired and granted to the US.
- (3) Other USFK units, agencies, and missions and functions shall relocate

to Osan Air Base, Camp Humphreys, Camp Carroll, or Camp Henry in accordance with the approved Master Plan.

- (4) UNC, CFC, and USFK shall maintain elements in Seoul to facilitate liaison with ROK government agencies. ROK MND will provide space for these liaison elements. The ROK shall operate and maintain a helipad in the vicinity of ROK MND, and provide access to this helipad for UNC, CFC, and USFK.
- (5) USFK will retain the Dragon Hill Lodge complex on Yongsan South Post, and a communications facility on Camp Morse. The final boundaries and scope of facilities retained by USFK in Seoul shall be determined as part of the comprehensive Master Plan approved by the SOFA Joint Committee. The ROK will provide facilities as required to ensure access and force protection for these retained facilities.

5. Funding: The Parties shall mutually develop detailed procedures to review, validate, and fund expenses incurred in implementing the Yongsan Relocation Plan. These procedures shall be developed by a Joint Working Group appointed by the YRP Ad Hoc Subcommittee, and approved by the SOFA Joint Committee.

6. Amendments: Recommendations for amendments may be submitted with the consent of both Parties at any time. Requests for amendments will be made at least sixty (60) days in advance of the desired effective date of the amendment. Amendments approved by the SOFA Joint Committ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when the Parties notify each other of the completion of their respective legal requireme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mendment. Approved amendments will be consecutively numbered and attached to this AR.

7. Entry into Force: This AR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the Parties exchange written notifications that their respective lega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Relocation Of US Force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Yongsan Relocation Plan) have been fulfilled.

KIM, DONG-GHI

Colonel, ROK Army

Chairman, ROK Component

Ad Hoc Subcommittee for the
Yongsan Relocation Plan

DANIEL M. WILSON, JR

Colonel, US Army

Chairman, US Component

Ad Hoc Subcommittee for the
Yongsan Relocation Plan

MEMORANDUM OF The Joint Committee

Approved by exigent action of the Joint Committee on _____, 2004.

KIM, SOOK

Director-General

North American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ublic of Korea Representative to the
ROK-US SOFA Joint Committee

GARRY R. TREXLER

Lieutenant General

United States Air Forc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to the
ROK-US SOFA Joint Committee